

4 재정운용계획

4-1. 성인지 예산현황

☐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경상남도의 2017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153	987,259
여성정책추진사업	60	799,225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91	187,312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2	722

- ▶ 2017년 당초예산 기준
- ▶ 2017년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도 홈페이지](#) → [공개개방](#) → [재정정보](#) → [예산](#) → [예산서](#) → [성인지예산서](#))

●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의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 및 주민회의, 공청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경상남도는 모델안 2를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6,462,903	530,708	2

▶ 2017년 당초예산 기준

❖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운영계획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위원회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지원 기타 부칙	제11조(시행규칙) 부칙	제15조(시행규칙) 부칙	제24조(시행규칙) 부칙

❖ 2017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제안내용)	예산반영액	비고
계(26건)		530,708	
I. 산업경제분과(6건)		450,915	
전 부 서 국가산단추진단	경남미래50년 핵심전략 사업투자(전부서)	435,536	
고 용 정 책 단	조선업 실업대책예산지원 - 조선업희망센터운영	3,474	
국가산단추진단	조선업 실업대책예산지원 -주력산업(위기업종)육성지원 (국가직접지원)	1,600	
고 용 정 책 단	(예비)사회적기업지원	6,663	
국 제 통 상 과	금형시장 확대를 위한 세계적 박람회 참가지원	900	
경 제 정 책 과	전통시장 지원사업 중 안전시설, 소방 설비 등 지원	2,742	
II. 농해양수산분과(11건)		20,519	
어 업 진 흥 과	잠수 어업인 진료비 지원	40	
어 업 진 흥 과	해삼방류사업지원	3,000	
농 업 정 책 과	농번기마을공동급식지원	100	
농 업 정 책 과	여성농업인복지카드추진(브라보 바우처)	600	
농 업 정 책 과	농로 확포장 정비 사업지원 (기계화 경작로, 대구획 경지정리)	10,000	
친환경농업과	약용작물안정생산지원 (약초재배단지조성)	300	
친환경농업과	시설원예분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확대(노후시설현대화 사업 등)	1,100	

소관부서	사업명 (제안내용)	예산반영액	비고
친환경농업과	농기계 지원사업 기증확대지원 - 맞춤형중소형농기계지원	1,500	
농산물유통과	수출 농업 선도적 역할에 따른 수출농가지원	1,785	
농업기술원	한방 향노화 산업 예산지원 (약용자원연구 등)	1,476	
농업기술원	곤충산업투자확대(곤충의 신속한 산업화를 위한 핵심모델 개발 등)	618	
Ⅲ. 환경산림분과(3건)		7,016	
환경정책과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 (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업비 확대	230	
환경정책과	경상남도 녹색환경지원센터 사업비 확대	300	
환경정책과	슬레이트처리지원 사업범위확대	6,486	
Ⅳ. 도시건설분과(2건)		47,172	
도로관리사업소	안전한 도로환경 개선 필요 - 도로시설물정비사업	42,172	
도로과	문산~금산지방도 - 조기준공요청(공청회 의견)	5,000	
Ⅴ. 문화관광분과(3건)		4,993	
문화예술과 도립미술관	미술대회 입상 작품, 지역작가작품구입	320	
관광진흥과	관광해설사 인센티브 예산지원	673	
체육지원과	생활체육공원조성 시 운동장바닥사용 재교체	4,000	
Ⅵ. 복지여성분과(1건)		93	
서민복지 노인정책과	경상남도사회복지협의회관리운영비확대	93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도 홈페이지 → 공개개방 → 재정정보 → 예산 → 도정참여예산\)](#)

4-3. 성과계획서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경상남도의 2017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개수	지표수	단 위 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합계	21	172	335	543	6,957,854	6,705,341	252,513
의회사무처	1	10	29	13	14,068	13,438	629
공보관	1	1	2	5	6,211	4,439	1,772
감사관	1	1	2	6	570	571	0
여성가족정책관	1	6	9	10	734,715	688,192	46,523
고용정책단	1	1	4	4	21,861	14,659	7,202
기업지원단	1	3	7	5	26,811	32,561	△5,749
기획조정실	1	13	20	30	966,050	902,937	63,113
재난안전건설본부	1	10	16	38	517,320	557,961	△40,641
미래산업본부	1	11	19	27	139,668	126,923	12,745
행정국	1	5	17	24	650,656	615,413	35,243
해양수산국	1	13	31	29	116,943	113,119	3,824
도시교통국	1	12	19	27	217,974	208,071	9,903
문화관광체육국	1	8	18	23	202,094	183,827	18,266
복지보건국	1	8	20	28	1,884,477	1,844,294	40,183
소방본부	1	22	26	104	245,914	216,846	29,068
서부권개발본부	1	5	10	17	100,151	89,462	10,689
농정국	1	12	28	44	515,911	494,894	21,016
환경산림국	1	14	24	48	527,634	527,404	229
농업기술원	1	13	24	43	53,442	56,632	△3,191
인재개발원	1	1	1	4	4,976	4,777	198
보건환경연구원	1	3	9	14	10,408	8,917	1,491

-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도 홈페이지](#) → [공개개방](#) → [재정정보](#) → [예산](#) → [예산서](#) → [예산의 성과계획서](#))

4-4.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 ☐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39.55	46.56	33.54	30.95	61.35	11.77

-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도 홈페이지](#) → [공개개방](#) → [재정정보](#) → [재정현황](#))

4-5.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 (A)	예산편성액 (B)	차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167	167	-
	부단체장	233	233	-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930	1,766	△164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396	396	-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226	226	-
	의원국외여비	179	179	-
지방보조금		65,509	42,042	△23,467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	-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8,655	
공무원 일·숙직비			632	

-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7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자치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go.kr>)
- ☞ 지방의회관련경비 예산편성액 산출기준
 - 의정운영공통경비 : (6,100천원 × 55명) + (2,000천원 × 30명<예결특위 위원>) = 395,500천원
 - 의회운영업무추진비 : (의장 4,200천원 × 12월) + (부의장 2,100천원 × 2명 × 12월) + (상임위원장 1,300천원 × 7명 × 12월) + (예결위원장 1,300천원 × 2명 × 6월) = 225,600천원
 - 의원국외여비 : (2,500천원 × 55명) + (추가편성액 137,500천원 × 30%) = 178,750천원
-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기준액은 1인당 금액으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기준액과 차액은 미표기(일·숙직비 1인당 50천원, 금,토,공휴일전일 60천원)
-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산출내역 : 1,554,638원 × 5,567명 ≒ 8,654,670천원

4-6.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 ▣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6년	2017년
계	10,915	8,741
인건비 절감	-	213
지방의회경비 절감	62	-12
업무추진비 절감	358	395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	-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10,424	8,933
지방청사 관리·운영	71	-
읍면동 통합운영	-	-
민간위탁금 절감	-	-788

- ▶ 2017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6. 12. 30.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 인센티브, (-) 페널티

4-7.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 ☐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6년	2017년
계	-29,026	5,879
지방세 징수율 제고	-10,034	12,055
지방세 체납액 축소	-38,988	-18,790
경상세외수입 확충	2,788	11,355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17,208	1,259
탄력세율 적용	-	-
지방세 감면액 축소	-	-

- ▶ 2017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6. 12. 30.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 인센티브, (-) 페널티

4-8.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2016년에 우리 경상남도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해 당 없 음”		

-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 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4-9.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 2016년에 우리 경상남도가 재정분석 결과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800
재정분석 우수	2016년 재정분석 결과 최우수기관	500
공기업혁신 우수	2016년 지방공사·공단 혁신 우수기관	300

-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